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8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 구자근·박정하·김선교

박덕흠 • 인요한 • 김석기

유상범 · 최수진 · 박준태

강대식 · 김장겸 · 강명구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, 판로개척·해외진출, 창업교육, 데이터의 공유·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이때 청년창업기업,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,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

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	제10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		
추진 등) ① (생 략)	추진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	2		
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			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			
대할 수 있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		
	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		
	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		
	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		
	하는 창업기업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